

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. 2. 18 선고 2018가단308787(본소), 2019가단54667(반소)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 유류분반환청구]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

담당변호사 최유덕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창규

피 고 B

피고(반소원고) C

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D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

담당변호사 김선영, 이영직

변론 종결 2021. 2. 9

판결 선고 2021. 2. 18

주 문

1. 피고 B은 원고(반소피고)에게 본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본소 별지 목록 기재 상속분에 따라 2018. 6. 4. 유증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원고(반소피고)의 피고(반소원고) C에 대한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원고(반소피고) 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, 원고(반소피고)와 피고(반소원고)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예비적 반소를 합하여 원고(반소피고)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본소: 주문 제1항. 피고(반소원고,이하 '피고'라고만 한다) C은 원고(반소피고,이하 '원고' 라고만 한다) 에게 본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본소 별지 목록 기재 상속분에 따라 2018. 6. 4. 유증을 원인으로 한 지분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예비적 반소:원고는 피고 C에게 반소별 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중 6분의 1지분에관하여 2018. 7. 13.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청구의 표시: 본소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나. 적용법조: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,제1항)

2. 피고 C에 대한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

망 E(이하 '망인'이라고 한다)의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데,망인이 2018. 6. 4. 자필증서에 의하여 원고에게 망인의 재산인 본소별 지목록 기재부동산(이하 ' 이 사건 부동산' 이라 한다) 을 원고에게 유증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피고 C을 상대로 위 부동산 중 피고 C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/ 3지분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. 과 연 원고의 주장대로 망인이 자서에 의하여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 대망인이 이 사건부동산을 포함하여 반소별 지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원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

전문과 연월일(2018. 6. 4.) 및 망인의 주소,성명이 기재되고 날인이 된 유언증서(갑 제1호증)를 원고가 망인의 자필증서로 제출하였으나,망인이 위와 같은 내용을 자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 7, 8호증(유언검인조서와 진단서)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망인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본 소청구는 이유 없다(원고의 본소 청구가 인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 C의 예비적 반소 청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).

판사 장수영

별지